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487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청구]

## 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## 주 문

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5.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- 청구의 표시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### 판사선민정

### 별지